



제 1247호

2015년 7월 17일 금요일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공 고 제2015- 110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2
입법예고
- 공 고 제2015- 1109호 「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 9
공제등의가입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- 공 고 제2015- 1123호 소래지구 중2-110호선 보상협의 통지서 공시송달 15

고 시

- 고 시 제2015- 93호 통·반 구역 결정 고시 16
- 고 시 제2015- 95호 도로명주소 고시 24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공 고

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-1108호

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. 7. 13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조문을 개정하고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 변경 (안 제4조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5항 ⇒ 제4조의2제4항

나.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촉 위원 명확화 (안 제12조제4항제3호)

- 시민단체대표 ⇒ 시민단체[「비영리민간단체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)대표]

다. 「주민투표법」 인용 조문 추가 반영(안 제16조)

-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 조문 추가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. 8.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우 405-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/☎ 453-2202, FAX 453-2189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4. 일부개정조례(안) : 별첨

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5년 7월 일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

☐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용어 및 상위 법령 인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

☐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조문 반영 (안 제4조)
 -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---> 제4조의2제4항
-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촉 위원 명확화(안 제12조제4항제3호)
 - 시민단체대표 --->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)대표
- 「주민투표법」 인용 조문 추가 반영 (안 제16조)
 -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 조문 추가

☐ 본 문 : “별첨”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첨”☐ 참고자료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
- 「주민투표법」 제26조(재투표 및 투표연기) 제1항

남동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5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“시민단체대표”를 “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)대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 및 법 제13조제2항”을 “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주민투표의 대상)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·분합 3. · 4. (생 략) 5.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<u>기타</u>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들도록 한 사항 6. <u>기타</u> 주민의 복리,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	제4조(주민투표의 대상)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 ----- ----- 3. ·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6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
제12조(주민투표청구심의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(이하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~ 3. (생 략) 4. <u>기타</u>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· ③ (생 략)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1. · 2. (생 략) 3. 변호사, 대학교수, 공인회계사, <u>시민단체대표</u>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. <u>기타</u>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~ ⑧ (생 략)	제12조(주민투표청구심의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의</u> ----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시민단체</u> 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)대표 ----- 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
는 「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
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
 수 있다.

⑩ (생략)

제16조(공표방법 등) 법 제8조제2항, 법 제9조
 제4항, 법 제10조제2항, 법 제12조제3항, 법
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
 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
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구보, 게시판, 일간신문
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(남동구 홈페이지)에의
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.

⑨ -----대해서
는-----

 -----.

⑩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공표방법 등) -----

 ------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

 -----.

[참고자료]

□ 지방자치법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"행정면"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[본조신설 2009.4.1.]

□ 주민투표법

제26조(재투표 및 투표연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그 밖의 문제점		
부서별 의견			
협의개요	부 서	제출의견	검토내용

공 고

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-1109호

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·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남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. 7. 13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등록법 개정 조문 변경 (안 제36조)

-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⇒ 제36조

나. 기타 조례 문구 일부 수정

- 일부개정조례(안) 참조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5. 8.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우 405-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/☎ 453-2204, FAX 453-2189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4. 일부개정조례(안) : 별첨

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5년 7월 일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

☐ 제안이유

- 「주민등록법」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함.

☐ 주요내용

- 주민등록법 개정 조문 변경 (안 제36조)
 - 주민등록법 제20조 ---> 제36조

☐ 본 문 : “별첨”

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첨”

☐ 참고자료

- 「주민등록법」 제36조(보험·공제 등에의 가입)

남동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
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 일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”
를 “인천광역시 남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
입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기타전산정보처리조직”을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“으로 하
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
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와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등(이하 보험이라 한다)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제36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.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포함) 업무, 인감증명발급업무, 기타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(당시 업무처리자)를 말한다. 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열람, 주민등록 전출입, 주민등록증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(당시 업무처리자)를 말한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----- ----- -----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-----그 밖에 ----- ----- -----.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구청장은 인감·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	제4조(보험료의 지급) ----- -----해당 ----- -----.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구청장은 인감·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	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----- ----- -----그 밖에 ----- ----- -----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·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 구청장은 인감·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-----
-----해당-----

-----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 -----
-----대해서-----

-----그 밖에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[참고자료]

☐ 주민등록법

제36조(보험·공제 등에의 가입)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(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)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
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그 밖의 문제점		
부서별 의견			
협의개요	부 서	제출의견	검토내용

공 고

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-1123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『소래지구 중2-110호선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15년 7월 15일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사업의 개요

가. 사 업 명 : 도시계획시설 『도로:소래지구 중2-110호선』

나. 위 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-23번지 일원

다. 사 업 규 모 : A=1,872.0m² 중 136.0m², L=110.0m 중 15m, B=15.0m ~ 18.0m

라. 사 업 기 간 : 2016. 12. 31까지(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마. 사업 시행자 :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2. 공고기간 : 2015. 07. 16. ~ 2015. 07. 31.

3. 보상시기 : 2015. 08. 11한.

4. 보상대상

가. 토 지 : 소래지구 중2-110호선(2필지, 28m²)

나. 물 건 :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

5. 공시송달 대상자

연번	구분	성 명	주소	보상대상토지	사 유	비 고
1	소유자	정*순	남동구 논현동 ***	남동구 논현동111-46	주소불명	미등기
2	소유자	유*동	남동구 논현동 ***	남동구 논현동 111-320	주소불명	미등기

6. 보상절차 :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
산정된 금액으로 개별 보상협의체결 후 현금보상

7. 기타사항 :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
봅니다.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(☎032-453-299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고 시

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5-93호

통반 구역조정 결정고시

인천광역시 남동구 통·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·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.

- 다 음 -

- 시 행 일 자 : 2015. 7. 29.부터 시행
- 통·반 구역 조정 내역 : “ 첨 부 ”

2015. 7. 13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□ 통·반 구역 조정현황

구 분	조정전		증감		조정후		비 고
	통	반	통	반	통	반	
남동구	653	3,682	3	10	656	3,692	
장수서창동	44	224	3	10	47	234	

□ 통·반 구역 조정 세부내역

현행				조정후				비고 (조정내역)
통	반	관할구역	세대수	통	반	관할구역	세대수	
1	소계		564	1	소계		362	과밀통반 구역조정
	1	장아산로216,222,226 독곡로60번길43 장아산로218번길3,4,5,7, 8,9,10,12,13,14,16,17 장아산로224번길 3,6, 10,12,14,14-1,16	98		1	장아산로199번길 16,18,20,24, 26,28 장아산로205번길 19,23,25,29	76	
	2	장아산로206번길 1,5, 9,11,15,17,19	56		2	장아산로205번길16,20,22, 24,28,30	41	
	3	장아산로205번길 16,20, 22,24,28,30	41					
	4	장아산로202,204 장아산로200번길7,9,11, 13,17,19 장아산로206번길6,8,10, 12,14,18	114		3	장아산로206번길1,5,9,11, 15,17,19	56	
	5	장아산로199번길 16,18, 20,24,26,28 장아산로205번길 19,23, 25,29	76		4	장아산로202,204 장아산로206번길6,8,10,12, 14,18 장아산로200번길7,9,11,13, 17,19	114	
	6	장아산로229,231 장아산로217번길5,12,13 장아산로231번길9-3,9-5, 9-11 장아산로229번길6,8,12,16	88		5	장아산로198 장아산로200번길8,10,14, 16,20 독곡로62,64,66,68	75	
	7	장아산로217번길28 장아산로231번길6,8, 9-8,9-12,9-14,12,13, 14,17,20,25	91					

현행				조정 후				비고 (조정내역)
통	반	관할 구역	세대수	통	반	관할 구역	세대수	
15	소 계		574	15	소 계		333	과밀통반 구역조정
	1	장자로25,27,31,35 장자북로22,22-1,24,26, 28,28-1,30,30-1,32,36,38 장자로21번길2,10-1,10-2, 10-3,10-6,10-7,10-8,10-9, 10-11,10-14,10-15,10-16, 10-21,10-22,10-23,10-25, 10-26,10-28,10-29,10-32, 10-35,16 장자로41번길7,13	188		1	장자로50,54,55,55-1,56 장자로46번길1,5,9 장자로6번길101,103-4, 103-5,103-6,103-8,105, 109-2,109-3,109-5, 109-7 장자로51번길2,4,6,10, 16,20,22,26 장자북로50	77	
	2	장자로45번길2,8,10,12,22 장자로51번길1,3,5,7,9,9-1 장자로49,49-2,49-3,49-4, 49-6,49-7,49-8,49-10,49-12	34		2	장자로45번길2,8,10,12,22 장자로51번길1,3,5,7,9,9-1 장자로49,49-2,49-3, 49-4,49-6,49-7,49-8, 49-10,49-12	34	
	3	장자로41,41-1,43,55,55-1 장자북로42,42-1,46,48,50 장자로41번길6,8,10,12,18 장자로45번길3,5,9,9-1, 9-2,11,19,23 장자로51번길2,4,6,10, 16,20,22,26	141		3	장자로41,41-1,43 장자로41번길6,8,10,12,18 장자로45번길3,5,9,9-1,9-2,11	93	
	4	장자북로25,27,29,29-1, 31,35 장자북로37번길3,4,9,9-1,9-5, 9-7,9-13,9-17,12 장자북로43번길3,7,9, 14-2,14-5,14-8,14-9, 14-14,14-20,14-24,19, 21-3,21-5,21-6,23,27, 29-3,29-5,29-7	151		4	장자북로37번길4,12 장자북로43번길3,7,9 장자북로42,42-1,46,48 장자로45번길19,23	69	
	5	장자북로47	60		5	장자북로47	60	

현행			조정후			비고 (조정내역)
통반	관할구역	세대수	통반	관할구역	세대수	
16	소 계	360	16	소 계	307	과밀통반 구역조정
	1 장자로20,22,24,26,28,30-2,30-4 장자로16번길9,15,17,19,25	59		1 장자로20,22,24,26,28,30-2,30-4 장자로16번길9,15,17,19,25	59	
	2 인주대로1003-7,1014 장아산로3,5,9 장자로12-5,14,30-3,30-5,36,38, 38-1,38-2,40,42,46 장자로16번길4,22 장자로46번길2 장자로6번길33,35,39,41,47,49, 69,71,73,81,83,87,91,93	137		2 인주대로1003-7,1003-22, 1003-28,1003-36,1004, 1005,1007,1011,1014 장아산로3,5,9,12,14,15,17 장자로12-5,14 장자로16번길4,22 장자로6번길33,35,39,41,47,49, 72,78,82-1,82-3,82-5,82-6, 82-15,82-17,88,90,92,96 장자로46번길14-1,20	71	
	3 장자로50,54,56 장자로6번길72,78,82-1,82-3, 82-5,82-6,82-15,82-16,82-17, 82-18,82-20,82-24,82-26,88,90, 92,96,101,102,102-1,103-4,103-5, 103-6,103-8,105,108,110,109-2, 109-3,109-5,109-7,112-1,112-5, 112-7,112-17,112-20,112-21,114 장자로46번길1,5,9,11,14-1,15-1, 15-3,15-5,15-7,15-11,15-12,17,20	164		3 장자로30-3,30-5,36,38,38-1, 38-2,40,42,46 장자로46번길2 장자로6번길69,71,73,81,83,87, 91,93	107	
25	소 계	507	25	소 계	394	과밀통반 구역조정
	1 걸재천로25,33,35 걸재천로39번길 4,4-1,5,6,9,15, 23-11,23-13,26,30,35,36,41,41-1, 43,53 장아산로189번길2,6,10,12,14 장아산로191,193 독곡로73,75,75-1,77,79,81	142		1 걸재천로25,33,35 운연로38,38-1 걸재천로39번길 4,4-1,5,6,9,15, 19,22,23-11,23-13,26,30,35,36, 41,41-1,43,53	40	
	2 장아산로 176,178,182,184,186,188 장아산로190번길 4,10-2,10-6,10-8, 10-12,10-14,10-18,11,13,15,20, 21,22,26,30,34 장아산로174번길 13,15,23,27,31,31-1 독곡로60번길16 독곡로 51,52,52-1,55,57,59,61,65	156		2 장아산로189번길 2,6,10,12,14 장아산로191,193 독곡로73,75,75-1,77,79,81	102	
				3 장아산로199번길1,5,7,11,13,15 장아산로197 독곡로76,76-1,78,80,80-1	93	
25	소 계	507	25	소 계	394	과밀통반 구역조정
	1 장아산로 176,178,182,184,186,188 장아산로190번길 4,10-2,10-6,10-8, 10-12,10-14,10-18,11,13,15,20, 21,22,26,30,34 장아산로174번길 13,15,23,27,31,31-1 독곡로60번길16 독곡로 51,52,52-1,55,57,59,61,65	156		4 장아산로176,178,182,184,186,188 장아산로190번길4,10-2,10-6, 10-8,10-12,10-14,10-18,11,13,15 독곡로65 장아산로174번길13,15	77	

	3	독곡로 28, 30, 34, 36, 38, 38-1, 40, 42, 46 독곡로48번길6, 22, 24, 28, 30, 32, 36, 38, 42 독곡로16번길15	40		5	독곡로51, 52, 52-1, 55, 57, 59, 61 독곡로60번길16, 26-22, 26-30, 26-34, 26-38, 26-42 장아산로190번길20, 21, 22, 26, 30, 34 장아산로174번길23, 27, 31, 31-1	82	
	4	장아산로198 장아산로200번길8, 10, 14, 16, 20 독곡로62, 64, 66, 68	75					
	5	장아산로199번길 1, 5, 7, 11, 13, 15 장아산로197 독곡로76, 76-1, 78, 80, 80-1	94					

현행			조정 후			비고 (조정 내역)	
통 반	관 할 구 역	세대 수	통 반	관 할 구 역	세대 수		
31	소 계		487	소 계		323	과밀통반 구역조정
	1	매소홀로 1088번길 11, 27, 39 매소홀로 1104번길 8 독곡로 16번길 42-25 독곡로 6번길 43, 47, 49, 52 매소홀로 1090, 1100	58	1	매소홀로 1088번길 11, 27, 28, 39 매소홀로 1104번길 8 독곡로 16번길 42-25 독곡로 6번길 43, 47, 49, 52 매소홀로 1090, 1100	68	
	2	매소홀로 1088번길 28 매소홀로 1104번길 14, 18, 22, 30, 30-1, 34 독곡로 6번길 31, 35 독곡로 16번길 38, 42-8, 42-10	112	2	매소홀로 1104번길 14, 18, 22, 30, 30-1, 34 독곡로 6번길 31, 35 독곡로 16번길 38, 42-8, 42-10	102	
	3	매소홀로 1108, 1114, 1118 매소홀로 1104번길 7, 11, 27, 29, 33 독곡로 6번길 4, 8, 10, 16 독곡로 16번길 22-7, 22-9, 22-11, 22-19, 22-23, 26	100	3	매소홀로 1104번길 11, 27, 29, 33 독곡로 16번길 22-7, 22-9, 22-11, 22-19, 22-23, 26	62	
	4	독곡로 6, 8, 10, 12, 14, 16 독곡로 6번길 7 독곡로 16번길 4, 10, 12-5, 12-9, 12-16, 12-20, 14, 20, 22-6, 22-10, 22-12, 22-18	107	4	독곡로 16번길 12-5, 12-9, 14, 15, 20, 22-6, 22-10, 22-12, 22-18 독곡로 28, 30, 34, 36, 38, 38-1, 40, 42, 46 독곡로 48번길 6, 22, 24, 28, 30, 32, 36, 38, 42	91	
	5	매소홀로 1123, 1125, 1127, 1129, 1135, 1137, 1143, 1145 장아산로 129-8, 129-10, 129-18, 129-20, 129-22, 129-24, 130, 133, 134-3, 134-4, 134-7, 134-11, 134-13, 134-17, 135, 136, 137 장아산로 128번길 9, 14, 21	110				
45	소 계		-	소 계		331	신규주택 입주예정 에 따른 과밀지역 통반조정
	증 설		1	장아산로 216 장아산로 218번길 4, 8, 10, 12, 14, 16 독곡로 60번길 43 장아산로 217번길 5, 13	58		
			2	장아산로 222, 226 장아산로 218번길 3, 5, 7, 9, 13, 17 장아산로 232번길 8-10, 8-11, 8-12 장아산로 224번길 3, 6, 10, 12, 14, 14-1, 16 서창남순환로 62번길 16-17, 34-11, 34-12 서창남순환로 26-3	84		
			3	장아산로 229, 231 장아산로 217번길 12 장아산로 231번길 9-3, 9-5, 9-11 장아산로 229번길 6, 8, 12, 16	98		
			4	장아산로 217번길 28 장아산로 231번길 6, 8, 9-8, 9-12, 9-14, 12, 13, 14, 17, 20, 25	91		

현행				조정후				비고 (조정내역)
통	반	관할구역	세대수	통	반	관할구역	세대수	
46	소 계		-	46	소 계		320	신규주택 입주예정 에 따른 과밀지역 통반조정
	증 설		1		장자북로43번길 14-2, 14-8, 14-14, 14-20, 14-24, 19, 21-3, 21-5, 21-6, 23, 27, 29-3, 29-5, 29-7	88		
			2		장자북로25, 27, 29, 29-1, 31, 35 장자북로37번길 3, 9, 9-1, 9-5, 9-7, 9-13, 9-17 장자북로43번길 14-5, 14-9	53		
			3		장자로25, 27 장자로21번길 2, 10-1, 10-2, 10-3, 10-6, 10-7, 10-8, 10-9, 10-11, 10-14, 10-15, 10-16, 16 장자북로22, 22-1, 24, 26, 28, 28-1	82		
			4		장자로31, 35 장자로41번길 7, 13 장자로21번길 10-21, 10-22, 10-23, 10-25, 10-26, 10-28, 10-29, 10-32, 10-35 장자북로30, 30-1, 32, 36, 38	97		
47	소 계		-	47	소 계		305	신규주택 입주예정 에 따른 과밀지역 통반신설
	증 설		1		독곡로6, 8, 10, 12, 14, 16 독곡로6번길 7 독곡로 16번길 4, 10, 12-16, 12-20	70		
			2		독곡로6번길 4, 8, 10, 16 매소홀로 1104번길 7 매소홀로 1108, 1114, 1118	38		
			3		매소홀로 1123, 1125, 1127, 1129, 1135, 1137 장아산로 130, 134-3, 134-4, 134-7, 134-11, 134-13, 134-17, 136 장아산로 128번길 9, 14, 21	80		
			4		장아산로 111-17, 111-52, 111-63, 115, 123, 127, 129, 129-8, 129-10, 129-18, 129-20, 129-22, 129-24, 133, 135, 137 운연로 21 매소홀로 1143, 1145 걸재천로 1	117		

통·반 구역 조정 현황

▷ 승인일자: 2015.7.29

구분 동명	현행		증감		조정후		비 고
	통	반	통	반	통	반	
계	653	3,682	3	10	656	3,692	
구월1동	47	254	0	0	47	254	
구월2동	41	222	0	0	41	222	
구월3동	25	137	0	0	25	137	
구월4동	31	171	0	0	31	171	
간석1동	38	214	0	0	38	214	
간석2동	20	139	0	0	20	139	
간석3동	47	241	0	0	47	241	
간석4동	39	213	0	0	39	213	
만수1동	35	171	0	0	35	171	
만수2동	33	177	0	0	33	177	
만수3동	23	132	0	0	23	132	
만수4동	32	198	0	0	32	198	
만수5동	28	184	0	0	28	184	
만수6동	33	185	0	0	33	185	
장수서창동	44	224	3	10	47	234	
남촌도림동	34	193	0	0	34	193	
논현1동	39	241	0	0	39	241	
논현2동	33	210	0	0	33	210	
논현고잔동	31	176	0	0	31	176	

고 시

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-95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, 제24조제1항,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7월 16일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○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13-1 외 10건

○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15번길 17 외 4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비고
별 도 열 램(11건)						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	폐지 사유		비 고
별 도 열 램(5건)		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(☎032-453-2470)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(www.namdong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7. 1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2014. 01. 01.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-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연 번	종전주소			도로명주소		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비 고
1	인천광역시 남동구	간석동	88-7	인천광역시 남동구	간석로 41번길	13-1	2009. 11. 16	간석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420m지 점에서왼쪽으로분기하는도로	2015. 7. 16.	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간석로41번길 13-1번기초구간에위치하여13-1을 건물번호로부여	
2	인천광역시 남동구	남촌동	616-10	인천광역시 남동구	남동대로 425번길	18	2009. 11. 16	남동대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4260m 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하는도로	2015. 7. 16.	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남동대로 425번길 18번기초구간에위치하여18을 건물번호로부여	
3	인천광역시 남동구	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	02-1	인천광역시 남동구	선수촌공원로 55번길	24	2014. 7. 25	선수촌공원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 560m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하는도로	2015. 7. 16.	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선수촌공원로 55번길24번기초구간에위치하여24를 건물번호로부여	
4	인천광역시 남동구	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	08-1	인천광역시 남동구	선수촌공원로	49	2014. 7. 25	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공원을 인용하여 제명	2015. 7. 16.	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선수촌공원로49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49를건물번호로부여	
5	인천광역시 남동구	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	상업6-2	인천광역시 남동구	선수촌공원로 23번길	16-8	2014. 7. 25	선수촌공원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 240m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하는도로	2015. 7. 16.	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선수촌공원로23번길 16-8번기초구간에위치하여16-8을 건물번호로부여	
6	인천광역시 남동구	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	복컴1	인천광역시 남동구	인하로	616	2009. 7. 6.	인천과 하와이를 상징하는 인하대에서 시작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	2015. 7. 16.	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인하로616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616을건물번호로부여	
7	인천광역시 남동구	만수동	864-2, -3	인천광역시 남동구	백범로 206번길	20	2009. 11. 16	백범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2060m 지점에서오른쪽으로분기하는도로	2015. 7. 16.	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백범로206번길20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20을건물번호로부여	
8	인천광역시 남동구	서창동	664-1	인천광역시 남동구	서창남로	52	2012. 3. 28	서창동 남쪽에서 시작되는 도로임을 인용하여 제명	2015. 7. 16.	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서창남로52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52를건물번호로부여	
9	인천광역시 남동구	구월동	1171-3 외 6필지	인천광역시 남동구	성말로 32번길	19	2009. 11. 16	성말로의회시작지점에서부터약320m지 점에서오른쪽으로분기하는도로	2015. 7. 16.	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성말로32번길 19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9를건물번호로부여	
10	인천광역시 남동구	서창동	555-12, -13	인천광역시 남동구	매소홀로 1104번길	17	2009. 11. 16	매소홀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 약11040m지점에서오른쪽으로 분기하는도로	2015. 7. 16.	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매소홀로1104번길 17 번기초구간에위치하여17을건물번호로부여	
11	인천광역시 남동구	고잔동	739-10	인천광역시 남동구	앵고개로 654번길	22	2009. 11. 16	앵고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6540m 지점에서오른쪽으로분기하는도로	2015. 7. 16.	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앵고개로654번길22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22를건물번호로부여	

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종전주소			도로명주소		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남동구	간석동	76-7	인천광역시 남동구	간석로15번길	17	2015.7.8.	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	
2	인천광역시 남동구	고잔동	362-8	인천광역시 남동구	앵고개로697번길	22	2015.7.8.	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	
3	인천광역시 남동구	간석동	111-13	인천광역시 남동구	경인로644번길	20	2015.7.10.	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	
4	인천광역시 남동구	고잔동	731-8	인천광역시 남동구	아암대로	1147	2015.7.10.	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	
5	인천광역시 남동구	간석동	410-1	인천광역시 남동구	예술로268번길	52	2015.7.13.	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	